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提案事由)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키 위함.

(主要骨子)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 업무의 읍.면.동위임(제2조중 제3호삭제)

(檢討意見)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제2조에,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사항,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주민등록법 21조의 각종 벌칙 규정등을 제외한 사항만 읍.면.동에 위임토록 했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읍.면.동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읍.면.동으로의 위임이 「재위임」이 아닌 「위임」임을 알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중 시장 권한의 일부를 하부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함은 법적 저촉됨이 없다 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책임성, 능률성을 줄이는데도 바람직하다 하겠음.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본 조례 제2조 제1호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대하여 읍.면.동에 위임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발급과정을 살펴보면 읍.면.동에서 직인까지 인쇄된 백지용지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지장까지 날인하여 시에 제출, 시에서는 비닐피복 접착후 다시 읍.면.동에 회송하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와같이 시에서는 비닐 피복 접착 기능만하고 실질적 발급 사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되지않나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2항에는 제1항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